

2026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5 - 401호

2026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관련 민간위탁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 **(개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에게 취업지원*(통상 1년), 생활안정지원(6개월)을 함께 제공('21년~)

* 전담상담사와 1:1 심층상담(3~6회)을 통해 개인 역량·의지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통상 1년, 최대 22개월)

- **(요건)** “연령”·“소득”·“재산”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I·II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 **(I 유형)** 중위소득 60%('26년 1인가구 153.9만원), 재산 4억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

*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II 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15~69세(청년 소득무관)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구분		연령	중위소득	재산	취업경험	지원내용
I 유형	요건심사형 * 요건 해당시 의무 지원	15~69세	60% 이하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지원 + 구직촉진수당
	선발형 * 예산상황에 따라 선발	비경활 15~69세	60%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특례	15~34세	120% 이하		무관	
II 유형 (특정계층·청년층·중장년층)		15~69세	100% 이하 (청년: 소득 무관)	무관	무관	취업지원

- **(총 규모)** '26년 35만명 목표('25년 30.5만명 목표)

〈 '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변경사항 〉

※ '26년 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세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I 유형 구직촉진수당 인상**(월 50만원 → 월 60만원)

* (대상) '26년 I 유형 참여자(단, '25년 참여자도 '26년부터 60만원 인상분 적용)

- **II 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폐지**

* (대상) '26년 이후 신청하여 II유형에 참여하는 사람('25년 신청자는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폐지되나, 일반계좌제 훈련 중 취업률 60% 미만 과정 참여시 '25년과 동일하게 자기부담률 5%p 우대

- **(위탁내용)** I 유형 청년특례, II 유형(조건부 수급자 제외) 참여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위탁기관)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구직활동프로그램 제공, 취업알선 등 제공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구직촉진수당 지급 업무 수행

- **(위탁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1년)

- **(위탁규모·범위)** 총 20.7만명*으로, 지방고용노동지청 관할 내에서 위탁사업 수행 가능 【붙임 1, 2 참조】

* 지방고용노동지청별로 그 간의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기관 선정(I 유형 청년특례 10.5만명, II유형 10.2만명(조건부 수급자 제외))

** 예산 상황에 따라 신규배정이 중단될 수 있음

- **(성과평가)** '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 약정을 체결한 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사업운영 결과를 매년 1회 평가 【별첨자료 참조】

- **(위탁비)** 참여자 1인당 기본금 및 취업인센티브

- **(기본금)**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1인당 ① I·II유형 청년: 45만원, ② II유형 중장년: 50만원, ③ II유형 특정계층: 70만원

- 직업훈련 겸업기관 및 대학 내 사무소는 기본금 감액 지급

	I·II유형 청년	II유형 중장년	II유형 특정계층
일반	45만원	50만원	70만원
대학 내 사무소	35만원	40만원	60만원
직업훈련 겸업기관*	30만원	35만원	45만원

* 위탁기관 대표자, 대주주(전체 주식의 50% 이상 보유) 본인과 이들의 배우자, 부모·자녀가 직업훈련기관의 대표자를 겸업하고 있는 위탁 기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해당 기관의 직업훈련에 연계하는 경우 기본금 차감

- **(취업인센티브)** 참여자의 조기취업 정도, 취업한 일자리의 임금수준, 참여자의 취업역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차등 지급*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사후관리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참고 1 '26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인센티브 단가표

□ 기본 단가표 (단위: 만원)

유형 취업역량	II 유형 특정계층					I·II 유형 청년, II 유형 중장년				
낮음 (취업역량평가 낮음)	구 분	임금연동 인센티브				구 분	임금연동 인센티브			
		~215 미만	~245 미만	~275 미만	275 이상~		~215 미만	~245 미만	~275 미만	275 이상~
	6개월이내 취업	60	85	110	175	6개월이내 취업	50	75	100	155
	12개월이내 취업	40	65	90	155	12개월이내 취업	30	55	80	135
	18개월이내 취업	20	45	70	115	18개월이내 취업	10	35	60	95
높음 (취업역량평가 보통·높음)	구 분	임금연동 인센티브				구 분	임금연동 인센티브			
		~215 미만	~245 미만	~275 미만	275 이상~		~215 미만	~245 미만	~275 미만	275 이상~
	6개월이내 취업	40	65	90	155	6개월이내 취업	30	55	80	135
	12개월이내 취업	20	45	70	135	12개월이내 취업	10	35	60	115
	18개월이내 취업	10	25	50	115	18개월이내 취업	5	15	40	95

□ 알선/본인취업별 지급기준

취업인센티브 지급기준	지급금액
① 컨설팅(구인·구직만남의 날, 이력서클리닉, 동행면접 등)을 통한 알선취업 또는 컨설팅을 통해 고용노동부 내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여 수료 전·후 3개월 이내 일경험 참여기업에 취업	단가 대비 1.2배
② 알선취업 성공(컨설팅 없는 알선취업) 또는 고용노동부 내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여 수료 전·후 3개월 이내 일경험 참여기업에 취업 또는 대면상담서비스 6회 이상* 제공을 통한 본인취업 * 대면상담서비스를 통한 선호직종 일자리알선 건수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건수의 합계가 3회 이상인 경우	단가금액
③ 간접 고용서비스(예: 입사지원서 컨설팅, 면접코칭, 취업특강 등 총 4회* 이상)를 통한 취업 * 같은 날에 여러 가지 간접고용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1회만 인정	단가 대비 50%

① 일반 민간위탁기관

□ **(선정원칙)** 지방고용노동지청별로 그 간의 사업수요, 성과 우수·전문적 역량을 갖춘 적정기관 선정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성과 우수기관은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우선선발 가능

- '23~'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평가결과 3년 연속 A등급, '23년 민간위탁사업 분야(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인증기관*

* '24년/'25년 우수인증기관은 각 '23~'25년 성과평가에서 A등급 2회, B등급 1회 이상을 획득한 경우만 우선선발 가능

□ **(신청자격)** 자격·인적·시설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격 제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관(사업자)

① **(자격 요건)** 유·무료직업소개 사업자(「직업안정법」 제18조·제19조)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수행 희망지역이 동일해야 함

② **(기본 인적요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업무담당자*로 지정·운영

* 취업상담·알선, 취업지원·구직활동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자(타 사업 겸직 불가)

- 업무담당자는 고용기한의 정함이 없이 당해 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시간제 근로 포함)여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 필수

*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만 60세 이상) 퇴직자를 재고용(법인인 경우 동일 자사에 한함)한 경우 관할 지방관서의 승인을 받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가능

- 업무담당자 1인당 상시 관리하는 참여자 수는 100명 이내로 관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담당자 지정시 1개월 이내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온라인 교육(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이해과정(13H)*) 수료 후 수료증 제출

* **(교과목)**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및 운영체계, 잡케어 시스템 및 AI 서비스를 활용한 직업상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유형별 선호일자리 및 산업 등

참고 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삭제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③ (기본 시설요건) 독립된 상담 공간 및 단체프로그램 운영공간 구비*

* 특화위탁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용 가능, 컨소시엄기관의 경우 구성기관 별로 구비 필요

구 분	상담 공간	단체프로그램 운영 공간
면 적	6.6m ² 이상(약 2평 이상)	16.5m ² 이상(약 5평 이상)
구조 및 시설	■ 독립된 상담공간(부스형태 가능) 필수	■ 단체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본시설* 구비 * 테이블, 의자, 마이크시설 등
비 고	■ 전용공간 내지 전용시설일 것을 요하지는 않음 ■ 구직 정보대 필수(인터넷 사용 가능한 기기 1대 이상 구비 필수)	

- 대학 내 사무소의 경우 대학 내 시설을 단체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활용 가능(공동이용 가능)

④ (자격 제외)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사업자)은 제외

- 1) 사업체의 대표(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 고용노동부의 위탁사업에 참여했던 기관(사업자)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가)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에 참여하여 위탁계약해지 조치를 받고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사업자)
 - 나)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참여기관으로서 위탁기관의 계약해지 요청에 의해 계약 해지되어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사업자)

* 사후관리 기관으로서 참여자의 이관 동의 및 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약정해지한 기관은 위에 해당하더라도 '26년도 국취 위탁사업 참여 가능

㉔ '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26년 위탁사업 참여가 제한된 기관(사업자)

* 단, 제주지역은 특별자치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 위탁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참여 제한 적용 유예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사업자)

- 다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직업 능력개발훈련법인은 예외적으로 참여 허용

참고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컨소시엄 구성)** 지청별 관할구역* 내에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2개 이상 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민간위탁사업 추가운영센터(김포고용센터 등 4개소)가 지정된 지역은 추가운영센터의 관할구역을 소속 지청 거점센터의 관할구역과 별도의 구역으로 구분함【붙임 2 참조】
↳(예시) 김해고용센터(김해시-밀양시), 양산고용센터(양산시)로 구분하고, 각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기관 간에만 컨소시엄 신청 가능

○ 단, '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 결과 A, B, C 등급을 획득한 기관만 대표기관으로 신청가능

○ 선정심사시 기관별 인프라·수행능력 등을 하나의 기관으로 합산하여 판단

□ **(신청기관 예외규정)** 시설 및 인적요건을 계약체결일 전날까지 충족하면 사업 가능(동 기간까지 미 충족시 선정 무효)

2 특화 민간위탁기관

- **(위탁내용)** ①위기청소년(자립준비청년 포함)·구직단념청년, ②중장년 장기구직자, ③북한이탈주민, ④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성실경영실패자 포함), ⑤신용회복지원자(정책서민 금융이용자 포함), ⑥결혼이민자 대상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중장년 장기구직자) II유형 중장년만 위탁대상

▲ (그 외 특정계층) 수급자격 심사결과 I 유형으로 분류되더라도 위탁대상

- 각 기관별 참여자 중 특화 위탁대상 비중은 1/2 이상 유지 필수
- 성과평가 시 일반 민간위탁기관과 특화 민간위탁기관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단, 특화대상 가산점 부여)

- **(위탁비)** 참여자 1인당 기본금 및 취업인센티브

- 수급자격 심사결과 I 유형으로 분류된 특정계층 참여자에 대해서도 II유형 특정계층 기본금, 취업인센티브 지급

- **(신청자격)** 자격·인적·시설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격 제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자격·시설 자격제외 사유) 일반 민간위탁기관과 동일함

② (기본 인적요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유형별* 업무담당자**로 지정·운영

* 위기청소년·구직단념청년, 중장년 장기구직자, 북한이탈주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성실경영실패자 포함), 신용회복지원자(정책서민 금융이용자 포함), 결혼이민자

** 취업상담·알선, 취업지원·구직활동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자(타 사업 겸직 불가)

- 업무담당자는 고용기한의 정함이 없이 당해 기관에 고용된 근로자* (시간제 근로 포함)여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 필수

*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만 60세 이상 퇴직자를 재고용(법인인 경우 동일 자사에 한함)한 경우 관할 지방관서의 승인을 받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가능

- 일반 민간위탁기관·특화 민간위탁기관을 병행하려는 기관은 본 사업과 별개로 특화 민간위탁기관 업무담당자를 지정·운영해야 함

- 업무담당자 1인당 상시 관리하는 참여자 수는 100명 이내로 관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담당자 지정시 1개월 이내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온라인 교육(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이해과정(13H)*) 수료 후 수료증 제출
- * (교과목)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및 운영체계, 잡케어 시스템 및 AI 서비스를 활용한 직업상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유형별 선호일자리 및 산업 등

□ **(컨소시엄 구성)** 일반-특화 민간위탁기관, 특화-특화 민간위탁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선정심사시 기관별 인프라·수행능력 등을 하나의 기관으로 합산하여 판단하며, 이외 컨소시엄 관련 사항은 일반 민간위탁기관과 동일함

IV

민간위탁기관 선정 절차(일반·특화 공통)

- **(신청 접수)** 위탁사업 수행 희망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 대표센터(거점센터)로 신청

신청기간	2025. 12. 8.(월) ~ 2025. 12. 15.(월)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위탁사업 수행 희망지역 관할 지청 대표센터(거점센터)
제출서류	❶ 참여신청서(서식 1-1, 1-2) ❷ 사업추진계획서(서식 2) ❸ 민간위탁기관현황 및 사업실적(서식 1 붙임) ❹ 사업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설립허가증, 위탁 희망지역 소재 사업자등록증,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증 등) ❺ 제출서류 ❶~❹을 담은 USB 1개 (담당자 메일로도 송부 가능)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l.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신청서를 제외한 증빙자료는 제본 또는 편철하여 8부 제출

- **(선정심사 기준)** 사업계획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인적자원투자계획을 심사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붙임 3 참조】**
- **(사업계획 적절성)** 더 많은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청단위로 사업 수행가능한 역량을 갖춘 기관 우대
 - **(사업수행능력)** 그간의 사업성과(실적)를 중심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 상담사가 많거나 상담경력이 많은 상담사가 있는 기관, 전문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 우대
 - **(인적자원투자계획)** 상담사 임금·교육수준이 높고 장기근속 방안 및 사기진작·동기부여 방안 등이 잘 갖춰진 기관 우대
 - **(가점)** 우수사례컨퍼런스 수상,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 직업상담사 1급 보유기관,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 우수기관 가점
 - **(감점)** 고용24 부적정 취업알선 업무처리 등 주요 지적사항 건당 감점
- **(심사·선정)** 관할 지청 대표센터(거점센터)별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지)청 단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
- **(신청자격 확인)** 관할 지청 대표센터(거점센터)별로 서류 검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요건 준수여부 확인

- **(선정심사 위원회) (지)청 단위로**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
 - 심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타 지역출신**(주요 업무장소가 타 (지)청 관내)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면서 **외부위원***이 **1/2 이상 되도록** 구성
 - * 선정심사 위원이 응모한 위탁기관과 친족관계 또는 당해 사업체의 임직원(과거 근무자 포함) 등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에서 배제

참고 4 (지)청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 **(구성)** (지)청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위원장) 고용센터 소장((지)청 내 다수 센터가 있는 경우 협의하여 결정)
 - (위원수) 위원장 등 총 7인(학계 및 지자체, 현장 전문가 등 외부위원 포함)
 - ▶ **(운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절차)** 위탁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서면심사, 현장심사, PT심사를 원칙으로 실시***
 - * 심사 절차 간소화:
 - ① 최근 3년 연속 A등급 및 민간위탁사업 분야 우수인증기관: 현장심사·PT심사 생략
 - ② '25년 국취 민간위탁기관 평가결과 A·B등급 기관: 현장심사·PT심사 생략 가능
 - ③ 전년도 참여기관으로 시설이전 등 특별한 사정변경 없는 기관: 현장심사 생략 가능
 - **(결과통보)** 관할 지청 대표센터(거점센터)별로 위탁기관 선정결과를 문서로 통보
 - * 결과통보 시 일반·특화기관 각각 예비 사업자(3개소 이내) 통보 가능
- **(위탁계약 체결)** 심사결과 순위 내에 포함된 위탁 사업자의 시설 및 인적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위탁계약 체결
- 선정 결과는 기관별로 개별 문서 통지('25.12.29.(월)까지)
 - * 심사결과 적정기관이 없는 경우, 위탁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은 위탁사업 실시지역 관할 “지방관서 분임계약관*”과 위탁기관(사업자)간에 체결('25.12.31.(수)까지)
 - * 48개 지청 (대표)고용센터 소장 또는 국민취업지원과(팀)장 등을 분임계약관으로 임명
 - 계약체결 시 임금체불 금지, 4대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준수 등 ‘업무담당자 근로조건 보호 약속서’ 필수 제출<서식 3>
 - 계약체결 시, 모든 민간위탁기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별칭, 로고, 간판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
- **(문의처)** '26년 고용노동지청별 공모서류 작성방법 등은 위탁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해당 고용노동지청 대표센터(거점센터)에 문의 **【붙임 2 참조】**

붙임 1
지청·고용센터별 관할구역

연번	지청	거점센터(48개소)	고용센터(101개소)	관할구역
1	서울청	서울고용센터	서울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
			서초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	서울강남고용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3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서울동부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강동구
			성동광진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
4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서울서부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5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고용센터	서울남부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양천구
			서울강서고용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6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노원구·도봉구
			강북성북고용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성북구
7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센터	서울관악고용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
8	충부청	인천고용센터	인천고용센터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및 옹진군
9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	인천북부고용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
			인천서부고용센터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
10	부천시청	부천고용센터	부천고용센터	경기도 부천시
			김포고용센터*	경기도 김포시
11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의정부고용센터	경기도 의정부시·포천시
			구리고용센터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고용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동두천고용센터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양주고용센터	경기도 양주시
12	고양지청	고양고용센터	고양고용센터	경기도 고양시
			파주고용센터	경기도 파주시
13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수원고용센터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동탄면·동탄동·병점동·진안동·반월동
			용인고용센터*	경기도 용인시
			화성고용센터	경기도 화성시(수원고용센터의 관할지역 제외)
14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	성남고용센터	경기도 성남시
			경기광주고용센터	경기도 광주시·양평군
			이천고용센터	경기도 이천시·여주시
			하남고용센터	경기도 하남시
15	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	안양고용센터	경기도 안양시·군포시
			광명고용센터	경기도 광명시
			의왕고용센터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16	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	안산고용센터	경기도 안산시
			시흥고용센터	경기도 시흥시

연번	지청	거점센터(48개소)	고용센터(101개소)	관할구역
17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평택고용센터	경기도 평택시
			오산고용센터	경기도 오산시
			안성고용센터	경기도 안성시
18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춘천고용센터	강원도 춘천시·화천군·홍천군·양구군·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19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	강릉고용센터	강원도 강릉시·동해시
			속초고용센터	강원도 속초시·고성·양양군
20	원주지청	원주고용센터	원주고용센터	강원도 원주시·횡성군
21	태백지청	태백고용센터	태백고용센터	강원도 태백시
			삼척고용센터	강원도 삼척시
22	영월출장소	영월고용센터	영월고용센터	강원도 영월군·정선군·평창군
23	부산청	부산고용센터	부산고용센터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서구·영도구·남구·부산진구·연제구
			부산사하고용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24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	부산동부고용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금정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25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	부산북부고용센터	부산광역시 북구·사상구·강서구
26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창원고용센터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성산구·진해구)
			마산고용센터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합안군·의령군·창녕군
27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	울산고용센터	울산광역시
28	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	김해고용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양산고용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밀양고용센터	경상남도 밀양시
29	진주지청	진주고용센터	진주고용센터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산청군
			하동고용센터	경상남도 하동군·남해군
			거창고용센터	경상남도 거창군·합천군·함양군
30	통영지청	통영고용센터	통영고용센터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
			거제고용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31	대구청	대구고용센터	대구고용센터	대구광역시 중구·수성구
			대구강북고용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경상북도 군위군
			대구동부고용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경산고용센터	경상북도 경산시·영천시·청도군
32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대구서부고용센터	대구광역시 남구·서구·달서구
			대구달성고용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칠곡고용센터	경상북도 칠곡군(석적읍 중리 국가산업단지 제외), 성주군
33	포항지청	포항고용센터	포항고용센터	경상북도 포항시·영덕군·울릉군·울진군
			경주고용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연번	지청	거점센터(48개소)	고용센터(101개소)	관할구역
34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	구미고용센터	경상북도 구미시·칠곡군(석적읍 중리 국가 산업단지)
			김천고용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35	영주지청	영주고용센터	영주고용센터	경상북도 영주시·봉화군
			문경고용센터	경상북도 문경시·상주시
36	안동지청	안동고용센터	안동고용센터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
37	광주청	광주고용센터	광주고용센터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
			광주광산고용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영광군·함평군
38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전주고용센터	전라북도 전주시·무주군·장수군·진안군·완주군·임실군
			정읍고용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남원고용센터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
39	익산지청	익산고용센터	익산고용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김제고용센터	전라북도 김제시
40	군산지청	군산고용센터	군산고용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고용센터	전라북도 부안군·고창군
41	목포지청	목포고용센터	목포고용센터	전라남도 목포시·신안군·진도군·무안군·영암군
			해남고용센터	전라남도 강진군·해남군·완도군·장흥군
42	여수지청	순천고용센터	순천고용센터	전라남도 순천시·보성군·고흥군
			여수고용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광양고용센터	전라남도 광양시
43	대전청	대전고용센터	대전고용센터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공주고용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세종고용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논산고용센터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
44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	청주고용센터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괴산군·보은군·증평군
			옥천고용센터	충청북도 옥천군·영동군
45	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	천안고용센터	충청남도 천안시·당진시·예산군
			아산고용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46	충주지청	충주고용센터	충주고용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고용센터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음성고용센터	충청북도 음성군
47	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	보령고용센터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부여군·홍성군·청양군
48	서산출장소	서산고용센터	서산고용센터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고용센터(관할구역: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담당

* (추가지정센터) 김포고용센터(부천시청), 남양주고용센터(의정부지청), 용인고용센터(경기청), 양산고용센터(양산시청)은 지청 내 민간위탁기관 수·분포, 민원인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사업 추가운영센터로 지정(남양주고용센터는 구리고용센터 관할 포함)

↳ 선정심사는 각 지청별 거점센터에서 일괄 진행하며, 컨소시엄기관은 추가지정센터 내에서만 운영 가능

붙임 2
지청별 대표센터(거점센터) 및 담당자 연락처

연 번	지청	거점센터 (48개소)	연락처	연 번	구분	거점센터 (48개소)	연락처
1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	02-2004-7029	25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	051-330-9846
2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	02-3468-4735	26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055-239-5358
3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02-2142-8528	27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	052-228-1948
4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02-2077-3429	28	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	055-330-6401
5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고용센터	02-2639-2476	29	진주시청	진주고용센터	055-760-6781
6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02-2171-1859	30	통영지청	통영고용센터	055-650-1836
7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센터	02-3282-0613	31	대구지방 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053-667-6116
8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032-460-4791	32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053-605-6435
9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	032-540-5826	33	포항지청	포항고용센터	054-288-3560
10	부천시청	부천고용센터	032-320-8979	34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	054-440-2025
11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031-828-0827	35	영주시청	영주고용센터	054-639-1138
12	고양지청	고양고용센터	031-920-3968	36	안동지청	안동고용센터	054-851-8077
13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031-231-7963	37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062-609-8536
14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	031-739-3125	38	전주시청	전주고용센터	063-270-9179
15	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	031-463-3854	39	익산지청	익산고용센터	063-840-6557
16	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	031-412-6636	40	군산지청	군산고용센터	063-450-0650
17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031-646-1271	41	목포지청	목포고용센터	061-280-0575
18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033-250-1959	42	여수지청	순천고용센터	061-720-9132
19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	033-610-1943	43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	042-480-3933
20	원주시청	원주고용센터	033-769-0918	44	청주시청	청주고용센터	043-230-7026
21	태백지청	태백고용센터	033-550-8633	45	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	041-620-7436
22	영월출장소	영월고용센터	033-371-6255	46	충주시청	충주고용센터	043-850-4045
23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	051-860-1946	47	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	041-930-6230
24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	051-760-7189	48	서산출장소	서산고용센터	041-661-5616

※ 제주고용센터 연락처: 064-710-4480

붙임 3

'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 세부기준

① 기존기관

심사항목	세부 평가영역		배점 기준				
			구분	배점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사업계획 적절성	■ 지원목표 인원 및 달성가능성 * '26년 지원목표 인원의 규모를 기준으로 모집·홍보 전략, 상담사 수 등을 통해 목표인원의 달성가능성 평가		정성(상대)	10	8	6	4
	■ 사업 운영계획 타당성 * 구인기업 발굴 계획,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계획 등 사업계획서상 추진역량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정성(절대)	15	12	9	6
	■ 민간위탁기관 시설 인프라 * 상담실·휴게공간·단체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 시설 및 집기 등의 양적·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정성(상대)	5	4	3	2
사업수행 능력	기관역량	■ '25년 민간위탁기관 수행역량(평가등급)	정량(절대)	10	8	6	4
	참여자 모집 및 매칭 역량	■ '25년 지원목표 대비 자체모집률	정량(상대)	5	4	3	2
	상담사 역량	■ 신청일 기준 상담사 인원	정량(상대)	10	8	6	4
		■ 신청일 기준 상담사 1인당 평균 경력(이전기관 포함)	정량(상대)	5	4	3	2
		■ 신청일 기준 상담사 1인당 평균 해당 기관 근속경력	정량(상대)	5	4	3	2
	취업지원 프로그램 기획·제공	■ '25년 자체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실적	정량(상대)	5	4	3	2
		■ '25년 일경험프로그램 연계인원 수 * 미래내일일경험, 중장년경력지원제 등 고용노동부 내 실적 확인이 가능한 사업에 한함	정량(상대)	5	4	3	2
연계·협업 역량	■ '25년 취업지원 관련 연계·협업 실적 * 고용복지+센터와의 연계·협업 실적 * 타 고용서비스 기관과의 연계·협업 실적	정성(절대)	5	4	3	2	
인적자원 투자계획	■ 신청일 기준 '25년 상담사 평균 임금 수준		정량(상대)	10	8	6	4
	■ 신청일 기준 '25년 상담사 평균 교육이수 수준 및 계획준수 여부, '26년 교육운영 계획		정량(상대)	5	4	3	2
	■ 상담사 보호 및 관리계획 적절성 * 악성민원 발생 시 상담사 보호방안, 안전한 상담환경 조성계획,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 및 장기근속 유도 방안, 상담사 사기 진작을 위한 동기부여 방안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평가		정성(절대)	5	4	3	2
가점	■ '25년 우수사례 컨퍼런스 장관상 이상 수상		건당 1점				
	■ 직업상담사 1급 보유자		1인당 1점				
	■ '23~'25년 국채 민간위탁기관 평가결과 A~B등급 이력		연도별 A등급 1점, B등급 0.5점				
	■ '23년 민간고용서비스(국채 분야) 우수인증기관		0.5점				
	■ '24년~'25년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 * 광역형 인증기관의 훈격별 점수는 본사에 한해 적용되며, 지사는 일괄 0.5점 부여		대상 3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1점, 기타 인증기관 0.5점				
감점	■ 고용24 부적정 취업알선 업무처리 등 주요 지적사항		건당 1점				

* 상대평가시 탁월·우수·보통·미흡부문은 각 심사대상 기관의 25%를 넘지 않아야 함

② 신규기관

심사항목	세부 평가영역		배점 기준				
			구분	배점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사업계획 적절성	■ 지원목표 인원 및 달성가능성 * '26년 지원목표 인원의 규모를 기준으로 모집·홍보 전략, 상담사 수 등을 통해 목표인원의 달성가능성 평가		정성(상대)	10	8	6	4
	■ 사업 운영계획 타당성 * 구인기업 발굴 계획,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계획 등 사업계획서상 추진역량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정성(절대)	15	12	9	6
	■ 민간위탁기관 시설 인프라 * 상담실·휴게공간·단체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 시설 및 집기 등의 양적·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정성(상대)	10	8	6	4
사업수행 능력	참여자 모집 및 매칭 역량	■ '25년 유사사업 홍보실적 및 언론보도사례 등	정성(절대)	5	4	3	2
		■ '25년 유사사업 취업인원 수	정량(상대)	5	4	3	2
	상담사 역량	■ 신청일 기준 상담사 인원	정량(상대)	10	8	6	4
		■ 신청일 기준 상담사 1인당 평균 경력(이전기관 포함)	정량(상대)	5	4	3	2
		■ 신청일 기준 상담사 1인당 평균 해당 기관 근속경력	정량(상대)	5	4	3	2
	취업지원 프로그램 기획·제공	■ '25년 취업알선·취업지원프로그램·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 유사사업 운영실적 * 유사사업의 참여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성과등급 등 성과지표 및 사업비 수준 등 양적 요소와 우수 사례 선정 등 질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정성평가 * 취업취약계층 발굴 및 서비스 연계에 직접 도움이 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미래내일 일경험,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교육 사업을 운영중인 기관은 배점 상향	정성(절대)	10	8	6	4
	연계·협업 역량	■ '25년 취업지원 관련 연계·협업 실적 * 고용복지+센터와의 연계·협업 실적 * 타 고용서비스 기관과의 연계·협업 실적	정성(절대)	5	4	3	2
인적자원 투자계획	■ 신청일 기준 '25년 상담사 평균 임금 수준		정량(상대)	10	8	6	4
	■ 신청일 기준 '25년 상담사 평균 교육아수 수준 및 '26년 교육운영 계획		정량(상대)	5	4	3	2
	■ 상담사 보호 및 관리계획 적절성 * 악성민원 발생 시 상담사 보호방안, 안전한 상담환경 조성계획,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 및 장기근속 유도 방안, 상담사 사기 진작을 위한 동기부여 방안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평가		정성(절대)	5	4	3	2
가점	■ 직업상담사 1급 보유자		1인당 1점				
	■ '23~'24년 국취 민간위탁기관 평가결과 A~B등급 이력		연도별 A등급 1점, B등급 0.5점				
	■ '23년 민간고용서비스(국취 분야) 우수인증기관		0.5점				
	■ '24~'25년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 * 광역형 인증기관의 훈격별 점수는 본사에 한해 적용되며, 지사는 일괄 0.5점 부여		대상 3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1점, 기타 인증기관 0.5점				
감점	■ 고용24 부적정 취업알선 업무처리 등 주요 지적사항		건당 1점				

* 상대평가시 탁월·우수·보통·미흡부문은 각 심사대상 기관의 25%를 넘지 않아야 함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참여신청서 (단독)				
☐ 일반 ☐ 특화 ☐ 일반+특화				
기관 현황 ☐ 본사 ☐ 지사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증)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Fax)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	
	직업소개업 등록 여부	☐ 등록 ☐ 미등록 ☐ 신고서 제출(제출일:)		
	유형	☐ 비영리 ☐ 영리 / ☐ 무료 ☐ 유료		
4대 보험 가입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위탁기관 소재지 관할관서	○○고용노동지청			
2026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12월 일 신청인 : (인) ○○고용노동(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다음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 후 8부 첨부하고, USB나 전자우편으로 별도제출) * 최근 3년 연속 국취 민간위탁기관 평가결과 A등급기관, 민간위탁기관사업 분야(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인 증기관('23년), '23~'25년 성과평가에서 A등급 2회, B등급 1회 이상을 획득한 '24~'25년 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 관의 경우도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출 필요 1. 사업체(기관)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입증자료 첨부) 2. 사업추진계획서(서식 2) 3.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건물평면도 사본,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 취업지원 조직 현황 별도 첨부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2호, 3호, 5호의 기관에 해당할 경우 관련 서류				

【붙임】

기관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1. 기관 현황(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작성)

① 인력현황

- 총 종사자 수: 명(대표자 포함, 고용보험 가입자)
- 총 상시근로자수 및 업무담당자수(신청일 '25.12.00.자 고용보험 가입자)
 -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신청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계약체결일 전날('25.12.30.)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 함
 - * 선정심사에서 확인된 업무담당자수는 지도·점검 시 다시 확인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 차년도 선정심사 등에 불이익하게 반영될 수 있음

구분	사업장 총 상시근로자수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담당자수		
		소 계	일반기관	특화기관
인원수				

- 현 고용보험 가입자 이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담당자 채용 계획
 - * 지원목표 인원의 달성가능성 확인 시 활용

② 조직현황

- 조직 예정인 경우 포함

※ 별도 조직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 표기

* 조직도 존재 시, 표 안에 표기

③ 물적 현황(시설 등)

○ 총 면적 : () m²

○ 세부시설 현황

구 분		면 적(m ²)	구체적인 활용내역	비고
사무실				
상담실	총합			
	상담실 1			
	상담실 2			
단체프로그램 운영공간				
기 타				

* 상담실, 교육장 등이 2개 이상인 경우 상담실 1, 상담실 2의 형태로 표기

* ‘기타’에는 휴게실, 면접실 등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사항 표기

건물 외관	건물 내부시설
사진 추가	사진 추가

건물 내부시설(상담실)	건물 내부시설(교육장)
사진 추가	사진 추가

* 추가할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표를 추가하여 작성

④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간)

구분(단위: 백만원)	'23년	'24년	합계	평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2. 관련 사업 수행 실적

① '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유사사업 수행 실적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작성)

- * '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기관이 동일 지청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달리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공모서류 제출시, 동 기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실적인정 가능 (여러 사무소를 신청할 경우, 대표 1개소만 인정)
-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 표기
-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실적평가가 가능한 계량화된 정량 실적과 정성적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 * 유사사업은 취업알선, 취업지원프로그램·구직활동프로그램 운영 등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취업알선) 중장년내일센터, 여성새일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청년도전지원사업,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교육,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등), K-MOVE스쿨, 구직지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프로그램

※ 상기 사업외 유사사업 여부는 지청에서 판단하되, 사업비 실적은 50%만 반영

연 번	발주기관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및 실적
				▪ (정량) 참여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성과평가등급 등 성과확인 가능한 지표 ▪ (정성)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사례(예:우수사례 선정 등)

* 발주기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위탁 기관 또는 부처명 기재

** 사업비 규모 : 위탁받아 실제 지원받은 사업비 규모 기재(단위: 백만원)

② '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유사사업 수행시 지적사항

* 고용24 부적정 취업알선 업무처리 등 주요 지적사항 작성(건당 1점 감점)

-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을 위반한 경우
- 고용24 부적정 취업알선업무처리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기관 지도·점검시 '시정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정부(중앙·지방) 위탁사업에서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 혐의가 제기된 경우

연 번	발주기관	사업명	주요 지적사항
			●예: 고용24 구직신청 임의삭제: 구직신청 100건 삭제, 관련자 3명 고용24 아이디 회수조치 받음 ●예: 사망일자 이후 상담일지 부적정 등록 5명 확인되어 '시정요구'조치 받음

3. 기타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과 동일 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인 직업훈련기관

연 번	법 인 명	법 인 번 호	훈 련 기 관 사 업 자 번 호	훈 련 기 관 명	대 표 자 명	소 재 지	주 요 훈 련 과 정

② '26년도 고용노동부 타 민간위탁사업 응모 현황

-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26년도 고용노동부 타 민간위탁사업
(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선정공모에 지원한 현황
- *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관련 사항(사업명, 발주부서, 사업내용) 적시

연 번	발 주 부 서	사 업 명	비 고
			▪ 공모 준비 / 신청·접수 / 심사 중/ 선정완료 中 택 1

③ 심사절차 간소화 희망 여부

심사 간소화 대상 (중복체크 가능)	☐ 현장심사 생략	☐ PT심사 생략
간소화 사유	☐ '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평가결과 A·B등급 ☐ 시설이전 등 특별한 사정변경 없음<현장심사 생략 사유>	

* 심사 간소화 대상에 체크하지 않을 경우 서면·현장·PT심사 실시함이 원칙

** 단, ①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평가결과 최근 3년 연속 A등급, ②'23년 민간 위탁사업분야(국채) 우수인증기관, ③'23~'25년 성과평가에서 A등급 2회, B등급 1회 이상을 획득한 '24년/'25년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은 경우 별도 체크하지 않더라도 현장·PT 심사 생략

< 작성시 주의사항 >

◆ 2026년 민간위탁사업 참여신청서, 기관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기타 구비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기관은 계약해지 대상임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참여신청서 (컨소시엄)					
☐ 일반 ☐ 특화 ☐ 일반+특화					
기 관 현 황	기 관 명	☐ 본사 ☐ 지사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전화번호(FAX)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	
☐ 일반 ☐ 특화	직업소개업 등록 여부	☐ 등록 ☐ 미등록 ☐ 신고서 제출(제출일:)			
	유형	☐ 비영리 ☐ 영리 / ☐ 무료 ☐ 유료			
	보험가입 여부	고용보험(O,X)	산재보험(O,X)	건강보험(O,X)	국민연금(O,X)
기 관 현 황	기 관 명	☐ 본사 ☐ 지사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전화번호(Fax)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	
☐ 일반 ☐ 특화	직업소개업 등록 여부	☐ 등록 ☐ 미등록 ☐ 신고서 제출(제출일:)			
	유형	☐ 비영리 ☐ 영리 / ☐ 무료 ☐ 유료			
	보험가입 여부	고용보험(O,X)	산재보험(O,X)	건강보험(O,X)	국민연금(O,X)
위탁기관 소재지 관할관서	○○고용노동지청				
2026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12월 일 신청인 : (인) ○○고 용 노 동 (지) 청 장 귀하					
※ 구비서류(다음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 후 8부 첨부하고, USB나 전자우편으로 별도제출) * 최근 3년 연속 국채 민간위탁기관 평가결과 A등급기관, 민간위탁기관사업 분야(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인 증기관('23년), '23~'25년 성과평가에서 A등급 2회, B등급 1회 이상을 획득한 '24~'25년 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 관의 경우도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출 필요 1. 사업체(기관)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입증자료 첨부) 2. 사업추진계획서(서식 2) 3.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건물평면도 사본,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4. 기관간 사업비 매칭 증빙자료(약정서·협약서·공문 등 형식 불문) * 취업지원 조직 현황 별도 첨부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2호, 3호, 5호의 기관에 해당할 경우 관련 서류					

【붙임】

기관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 대표기관·참여기관의 실적 및 현황을 구분하여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관명: _____>

1. 기관 현황(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작성)

① 인력현황

- 총 종사자 수: 명(대표자 포함, 고용보험 가입자)
- 총 상시근로자수 및 업무담당자수(신청일 '25.12.00.자 고용보험 가입자)
 -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신청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계약체결일 전날('25.12.30.)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 함
 - * 선정심사에서 확인된 업무담당자수는 지도·점검 시 다시 확인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 차년도 선정심사 등에 불이익하게 반영될 수 있음

구분	사업장 총 상시근로자수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담당자수		
		소 계	일반기관	특화기관
인원수				

- 현 고용보험 가입자 이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담당자 채용 계획
 - * 지원목표 인원의 달성가능성 확인 시 활용

② 조직현황

- 조직 예정인 경우 포함
 - ※ 별도 조직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 표기

* 조직도 존재 시, 표 안에 표기

③ 물적 현황(시설 등)

○ 총 면적 : () m²

○ 세부시설 현황

구 분		면 적(m ²)	구체적인 활용내역	비고
사무실				
상담실	총합			
	상담실 1			
	상담실 2			
단체프로그램 운영공간				
기 타				

* 상담실, 교육장 등이 2개 이상인 경우 상담실 1, 상담실 2의 형태로 표기

* ‘기타’에는 휴게실, 면접실 등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사항 표기

건물 외관	건물 내부시설
사진 추가	사진 추가

건물 내부시설(상담실)	건물 내부시설(교육장)
사진 추가	사진 추가

* 추가할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표를 추가하여 작성

④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간)

(단위: 백만원)

구 분	'23년	'24년	합계	평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⑤ 컨소시엄 내 세부 역할 및 구성 기관 간 협업방안

○

-

*

2. 관련 사업 수행 실적

① '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유사사업 수행 실적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작성)

- * '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기관이 동일 지청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달리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공모서류 제출시, 동 기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실적인정 가능 (여러 사무소를 신청할 경우, 대표 1개소만 인정)
-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 표기
-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실적평가가 가능한 계량화된 정량 실적과 정성적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 * 유사사업은 취업알선, 취업지원프로그램·구직활동프로그램 운영 등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취업알선) 중장년내일센터, 여성새일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청년도전지원사업,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교육,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등), K-MOVE스쿨, 구직지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프로그램

※ 상기 사업외 유사사업 여부는 지청에서 판단하되, 사업비 실적은 50%만 반영

연 번	발주기관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및 실적
				▪ (정량) 참여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성과평가등급 등 성과확인 가능한 지표 ▪ (정성)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사례(예:우수사례 선정 등)

* 발주기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위탁 기관 또는 부처명 기재

** 사업비 규모 : 위탁받아 실제 지원받은 사업비 규모 기재(단위: 백만원)

② '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유사사업 수행시 지적사항

- * 고용24 부적정 취업알선 업무처리 등 주요 지적사항 작성(건당 1점 감점)
 -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을 위반한 경우

- 고용24 부적정 취업알선업무처리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기관 지도·점검시 '시정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정부(중앙·지방) 위탁사업에서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 혐의가 제기된 경우

연번	발주기관	사업명	주요 지적사항
			•예: 고용24 구직신청 임의삭제: 구직신청 100건 삭제, 관련자 3명 고용24 아이디 회수조치 받음 •예: 사망일자 이후 상담일지 부적정 등록 5명 확인되어 '시정요구'조치 받음

3. 기타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과 동일 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인 직업훈련기관

연번	법인명	법인번호	훈련기관 사업자 번호	훈련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주요 훈련과정

② '26년도 고용노동부 타 민간위탁사업 응모 현황

-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26년도 고용노동부 타 민간위탁사업 (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선정공모에 지원한 현황
- *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관련 사항(사업명, 발주부서, 사업내용) 적시

연번	발주부서	사업명	비고
			▪ 공모 준비 / 신청·접수 / 심사 중/ 선정완료 中 택 1

③ 심사절차 간소화 희망 여부

심사 간소화 대상 (중복체크 가능)	☐ 현장심사 생략 ☐ PT심사 생략
간소화 사유	☐ '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평가결과 A·B등급 ☐ 시설이전 등 특별한 사정변경 없음<현장심사 생략 사유>

* 심사 간소화 대상에 체크하지 않을 경우 서면·현장·PT심사 실시함이 원칙

** 단, ①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기관 평가결과 최근 3년 연속 A등급, ②'23년 민간위탁 사업분야(국채) 우수인증기관, ③'23~'25년 성과평가에서 A등급 2회, B등급 1회 이상을 획득한 '24년/'25년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은 경우 별도 체크하지 않더라도 현장·PT 심사 생략

<2. 기관명: _____ >

1. 민간위탁기관 현황(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작성)

① 인력현황

※ 상기 사항 작성

< 작성시 주의사항 >

◆ 2026년 민간위탁사업 참여신청서, 기관 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기타 구비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기관은 계약해지 대상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추진계획서

I. '26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계획

1. 사업목표 및 세부 이행방안

<정량> '26년도 지원목표 인원(단위: 명): _____ 명

* 기관별 수행능력요건 충족 여부 판단 및 선정심사시 활용(10명 단위로 작성)

** '26년 지원목표 달성 수준은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 및 차년도 선정심사에서 확인하므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

<특화기관만 작성> '26년도 특화민간위탁기관 지원유형(2개 유형까지 중복체크 가능)

- | | |
|---|--|
| ☐ 위기청소년·구직단념청년 | ☐ 중장년 장기구직자 |
| ☐ 북한이탈주민 | ☐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성실경영실패자 포함) |
| ☐ 신용회복지원자
(정책서민 금융이용자 포함) | ☐ 결혼이민자 |

① 3년간('23~'25년) 사업운영 능력 및 향후 운영방향

※ 참여자 모집·홍보 전략, 구인기업 발굴 계획,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계획 등 지원목표 달성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향후 운영방안 작성

○

-

*

② 민간위탁기관 시설 인프라

※ 상담실·휴게공간·단체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 시설 및 집기 등의 양적·질적 수준을 평가

○

-

*

II. 세부 수행능력

※ (정량:기존기관) '25년 위탁기관 평가등급은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하므로, 신청기관에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1. 참여자 모집 및 매칭 역량

※ (정량:기존기관) '25년 지원목표 인원 자체모집 달성률은 심사시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하므로, 신청기관에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신규_표 II-1] 25년(1~11월) 유사사업 홍보·언론보도 사례 〈정량:신규신청 기관만 작성〉

1. 주요 홍보 노력				
연번	홍보주제	홍보기간	홍보방식(매체)	주요 성과
2. 언론보도 사례				
연번	보도매체	보도일자	주요내용(증빙내용 발췌·첨부)	

[신규_표 II-2] 유사사업 취업인원 수('25.1~11월) 〈정량:신규신청 기관만 작성〉

프로그램(사업)명	참여인원	취업인원

* 다수 유사사업을 운영한 경우, 대표 1개 사업만 제출

2.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부서 및 상담사 역량

[표 II-3]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부서 현황(신청일 기준)

1. 조직 내 국취 담당부서 위상								
☐ ○ - ☐ ○ -								
2. 인력총괄(신청일 시점 기준)								
※ 근무경력 총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에서 상담한 이력만 인정								
인원		상담분야 총 경력		신청기관 근무기간				
총합 <정량>	직업상담사 1급 보유자 <가점>	총합	평균 <정량>	총합	평균 <정량>			
명	명	개월	개월	개월	개월			
3. 개인별 인적현황(신청일 시점 기준)								
소속	성명	직위	상담분야 총 경력	신청기관 근무기간	관련 자격		1일 소정근로시간	비고
					직업상담사 1급	기타		
	000	컨설 턴트	○년 ○개월	○년 ○개월	보유/ 미보유			① 대표·임원여부 ② 집단상담프로 그램 진행자양성 과정 이수 여부 ③ 시간제 여부 ④ 특약기관여부 등

3. 취업지원프로그램 기획·제공 역량

[기존_표 II-4] 자체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실적('25.1~11월) 〈정량: 기존기관만 작성〉

연 번	프로그램 명	年 운영 횟수	참여 인원	세 부 내 용

※ (정량:기존기관) 고용노동부 내 일경험프로그램 연계인원은 심사시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하므로, 신청기관에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신규_표 II-5] 유사사업 운영실적('25.1~11월) 〈정량:신규신청 기관만 작성〉

연 번	발주 기관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및 실적
				▪ (정량) 참여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성과 평가등급 등 성과확인 가능한 지표 ▪ (정성)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사례(예:우수사례 선정 등)

※ 「서식 1-1 및 1-2(참여신청서) 붙임 > 2. 관련 사업 수행 실적 >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유사사업 수행 실적」에 기재된 내용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행실적을 제외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취업취약계층 발굴 및 서비스 연계에 직접 도움이 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미래내일 일경험,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교육 사업을 운영중인 기관은 배점 1단계 상향
↳ (예시) 유사사업 운영실적 평가결과 “우수” 기관 → “탁월” 배점 부여

4. 연계·협업 역량

[표 II-6] 고용복지+센터 연계·협업 실적('25.1~11월) <정성>

연 번	고용복지+센터명	협업 내용 및 실적
		(예시) 00고용복지+센터 중심의 00지역 청년고용네트워크 참여, 관내 00청년센터와 협력하여 위기청소년 대상 진로·지도 프로그램 00회 운영

※ 고용복지+센터와의 연계·협업 내용 및 실적을 작성

[표 II-7] 유관기관 연계·협업 실적('25.1~11월) <정성>

연 번	유관기관명	협업 내용 및 실적

※ 관내 타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지자체, 새일센터, 청년센터, 일자리센터, 하나센터,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교육기관 등 취업취약계층 발굴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관기관과의 연계·협업 내용 및 실적을 작성

Ⅲ. 인적자원 투자계획 및 기타

[표 Ⅲ-1] '25년 상담사 임금수준(단위: 명, 천원) <정량>

상담사 수	전체 업무담당자 연봉 (성과급 제외)	평균 연봉 (성과급 제외)

※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제외)을 모두 포함한 연간 보수 총액

※ 대표자(상담업무 겸업하는 경우도 포함)의 연간 보수 총액은 제외

※ 성과급: 고정적·정기적 형태로 지급되는 보상이 아닌, 상담실적 등 성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는 인센티브 형태의 급여

[표 Ⅲ-2] '25년 상담사 평균 교육이수(내·외부) 수준(단위: 횟수, 시간) <정량>

상담사명	교육프로그램	교육이수시간
1인당 평균 교육이수시간: 00시간		
가나다	A교육	3
홍길동	C교육	5

※ 기입 내용이 많을 경우 해당 내용은 붙임으로 별도 작성 가능

[표 Ⅲ-3] '25년 상담사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준수 여부(단위: 횟수, 시간) <정량:기존기관만 작성>

'25년 선정심사 시 제출 계획					'실제 운영여부	
연번	프로그램명	회당 운영 시간(A)	운영 횟수 (B)	총 운영 시간(A×B)	운영 여부 (O/X)	총 운영 시간(A×B)
자체 교육 시간 총합				('25년 계획) 00시간	-	(실제 운영) 00시간
1	A교육	3	2	6시간	O	6시간
2	B교육	3	2	6시간	X	0시간

※ 기입 내용이 많을 경우 해당 내용은 붙임으로 별도 작성 가능

[표 Ⅲ-4] '26년 상담사 평균 직무교육(내·외부) 실시계획(단위: 시간, 명) <정량>

업무 담당자 총 교육 시간	업무담당자 수	1인당 평균
360	6	60

※ 직무교육 실시계획 준수 여부는 차년도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

※ '27년 위탁기관 선정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육 수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사례 관리프로그램 1:1 코칭 참여하는 경우 교육시간 1.5배 인정 예정

□ 상담사 보호 및 관리계획 적절성

※ 악성민원 발생 시 상담사 보호방안, 안전한 상담환경 조성계획,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 및 장기근속 유도 방안, 상담사 사기진작을 위한 동기부여 방안 등

○

-

*

IV. 가점: 점

가점 항목	주요내용
'25년도 우수사례 컨퍼런스 (장관상 이상)	▪ 총 0점 ▪ 해당 사항 기재
직업상담사 1급 보유자	▪ 총 0명
'23~'25년 민간위탁기관 평가 결과	▪ 연도별 A등급 또는 B등급 여부
'23년 민간고용서비스(국채 분야) 우수인증기관	▪ 해당(연도 기입) / 비해당
'24~'25년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	▪ 해당(훈격 기입) / 비해당

※ 직업상담사 1급 보유자는 「서식 2(사업추진계획서)> II.세부 수행능력 > 2. 국민취업지원 제도 담당부서 및 상담사 역량」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함

※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을 토대로 하되, 서식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자가 양식을 재구성하여 제출 가능.

※ 다만, 한글을 이용하여 A4용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담당자 근로조건 보호 협약서

당사는 2026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임금 지급계획에 따라 책정된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겠습니다.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사업주의 법정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3.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 승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고용·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위 서약을 위반하는 경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계약서 등에 따라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2025. 12. .

서약자 :

대표

(인)

○○ 지청장 귀하